여수 웅천라온 더힐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화동동 산73-3번지외4필지
■ 공급대상: 전용면적60㎡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2세대(일반공급 110세대, 특별공급 62세대)
■ 시업주체: 주정건설 ■ 시행: 시공사: 주정건설 ■ 매수자: ㈜여수학옥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이버모델하우스운영안내
여수 웅천라온 더힐은 웅천홈보관과 당사 홈페이지의 시이버 모델하우스(https://wonderarmthehill.com)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청약일정, 청약안내, 상담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wonderarmthehill.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이 주택의 입대표보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입대표보관 방문구입의 경우 접수 및 정장계약 등 사전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 [여수웅천라온더힐] 상담전화☎ (061-692-620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처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홈 청약홈 공고표준안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청약신청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여수학옥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적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준 주거주택 보증금의 1일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시업주체는 우원건설㈜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차인 관리 일체는 시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5. 7. 16(수)]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명약일정(청약,청약1,나,이,국적, 무주택자요건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일 [2025. 7. 16(수)]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만은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이하 "세대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하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기준일(1호의 제2호의 일자)부터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시업주체로부터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다만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에 따라 미리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시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대장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기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가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1그룹의 주택일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혼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자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 등 청약자격 관련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오니 청약자 본인께서 직접 청약자격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여수학옥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적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준 주거주택 보증금의 1일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시업주체는 우원건설㈜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차인 관리 일체는 시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5. 7. 16(수)]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명약일정(청약,청약1,나,이,국적, 무주택자요건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일 [2025. 7. 16(수)]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만은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 제5조2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이하 "세대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하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하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하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조 제4항, 제5조2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여 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2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8. 12. 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8. 12. 11. 시행) 개정규정 시행일(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8. 12. 11. 시행) 개정규정 시행일(2018. 12. 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일가족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융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세대원전원 계약기간 포함)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 당첨자 중 금융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세대원전원 계약기간 포함)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